

- 2022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4월 5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임용 분야	직 급	인원	계약 기간	근무 시간	근무예정처	담당 직 무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 작성 등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규칙 제4조에 규정된 사항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적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바.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정책지원관 (7급) : 20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다. 주소지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기준

채용분야	세 부 자 격 요 건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7급)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연구, 조사, 분석, 입법 지원, 행정 등의 실무경력

※ 경력요건의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보수수준

- 연봉액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1조(별표3)]

임용분야	임용직급	약정기간	연봉액		週당근무시간
			상한액	하한액(기준액)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1년	63,693	45,237	40시간

- ※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임용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 2022. 4. 13. (수) ~ 4. 18.(월)
-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2층)
- 응시원서 제출 전 인천 동구청 민원지적과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가족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가족방문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 주소 : [우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의회사무과 채용담당자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 봉투 겉면에 ‘2022년 제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7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4. 13.(수) ~ 4. 18.(월)	4. 22.(금)	4. 27.(수)	5. 2.(월) 전·후

-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서류·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icdonggu.go.kr/>> 의회소식)

8 제출서류 <스테플러 사용 금지>

- 가. 응시자 서류 제출 목록표 1부 (소정양식) - (서식1)
- 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서식2)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정책지원관 7,000원
 - ※ 인천광역시 동구청 민원지적과 11번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 다.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양식) - (서식3)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서식4)
-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서식5)
- 바.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서식6)
-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7)
-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병역포함) 1부 - (서식8)
- 자.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 - (서식9) ※ 해당자에 한함.
- 차.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경력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 기관의 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주당 근무시간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서식9) 경력사실확인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 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서'(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증빙자료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tel:1577-1000)]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파.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하. 본인사진(반명합판) (JPG파일 : hiclare7@korea.kr 로 송부)

-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
-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다.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 라.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사.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자.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icdonggu.go.kr/의회소식>)에서 확인 가능함
-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 032-770-6742)